

제330회 임시회
2014.06.20.(금)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06.20.(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2014년 06월 02일

다. 회부일자: 2014년 06월 05일

라. 상정일자: 2014년 06월 11일

(제3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교육국장 김화석)

가. 제안이유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청원군 통합 청주시가 2014.7.1.부로 출범함에 따라 학원 시설 규모에 관한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됨에 따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충 학습 교습과정의 학원 시설규모 개정(별표1)

※ 현행규정: 시지역(충주시·제천시는 군지역 적용) 90m²이상, 군지역60m² 이상

3. 검토보고 요지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정대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7.1. 통합 청주시가 출범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시·군별 시설규모가 달리 적용되는 보충학습 교습 과정 학원의 군지역 시설기준 적용 대상에 통합 청주시 읍·면 지역을 포함하여, 도내 읍·면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 론 요 지: “생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첨부서류: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보충학습 교습과정의 시설기준 면적 중 충주시, 제천시 지역은 기타지역 시설규모를 적용함”을 “보충학습 교습과정의 시설기준 면적 중 충주시의 읍·면, 충주시, 제천시 지역은 군지역 시설규모를 적용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원군 지역에 학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등록이 신청되어 처리 중에 있는 경우에는 군지역의 학원 시설 규모를 적용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23.] [법률 제11624호, 2013.1.23.]

제2조(설치 등) ① 충청북도의 청주시와 청원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 충청북도에 청주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관할 구역
청주시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충청북도 청주시 일원과 청원군 일원

[시행일 : 2014.7.1] 제2조

부칙 <제11624호, 2013.1.23>

제4조(종전시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시군에 설치된 동과 읍·면은 각각 청주시의 동과 읍·면으로 본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제8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 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